

남 해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 607호 2018. 5. 17.(목)

규 칙

남해군규칙 제1134호 남해군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 1

고 시

제2018 - 61호 감암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고시 42
 제2018 - 64호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45
 제2018 - 67호 남해군계획시설(교통시설: 도로, 도시계획도로 소로2-27호 향교~신우보람)
 실시계획인가 고시 47

공 고

제2018 - 542호 마을어업 면허 처분사항 공고52
 제2018 - 543호 공시송달 공고53
 제2018 - 545호 남해군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56
 제2018 - 547호 남해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61
 제2018 - 566호 남해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66
 제2018 - 569호 남해군관리계획(공원,수도공급설비)결정(변경) 공람 고 고73
 제2018 - 570호 남해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78
 제2018 - 575호 남해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84
 제2018 - 578호 남해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91

회 램									
-----	--	--	--	--	--	--	--	--	--

발행 : 남해군

편집 : 기획감사실(860-3045, 행정 3045)

규 칙

남해군 규칙 제1134호

남해군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

남해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한다.

2018년 5월 17일

남해군수 권한대행

부 군 수

남해군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

남해군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단체”를 각각 “법인·단체”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해당 사실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군수가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무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공무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3. 공무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4.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5.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 6.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가.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 나.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 다.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 7. 그 밖에 군수가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② 직무관련자 또는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군수에게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 3. 직무 재배정
 - 4. 전보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 2.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⑥ 군수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제4항에 따른 조치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한 현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의2부터 제5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군수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하였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3.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사항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의3(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소속된 기관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소속 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군수가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군수가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군수가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공무원에게 명하여야 한다.

제5조의4(가족 채용 제한) ① 군수는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군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군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산하기관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의 가족이 자신이 군의 산하기관에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의5(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군수는 군과 군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고위공직자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이 군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군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산하기관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군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의6(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인 군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다음 각 호의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골프를 함께 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여행을 함께 하는 행위
3.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행성 오락을 함께 하는 행위
4. 직무관련자인 퇴직자가 비용을 부담하는(퇴직자가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후원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식사·음주 등의 향응을 함께 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사적 접촉을 할 때에는 미리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접촉을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제3항 중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10호 서식”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공무원”을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를 “공직자”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군수가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제3항제2호 중 “별표 1”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그 수수 사실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를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그 수수 사실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군수가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군수가 정하는 금액이란 별표 2와 같다.”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12호 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제15조제5항 중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을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①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군수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 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 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②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이거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제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제17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제21조제1항 중 “서면으로” 를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공무원은 제15조제5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였거나, 제2항에 따라 금품 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그 반환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제6항 중 “별지 제8호서식” 을 “별지 제18호 서식” 으로 한다.

제23조제5항 중 “별지 제9호서식” 을 “별지 제21호 서식” 으로 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3호 서식부터 별지 제21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는 고위공직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이 공무원 또는 직원 등의 채용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이 수의계약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직무관련자 거래 신고에 관한 적용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거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	-----	--

신고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직무 관련 업무	(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직무관련자	성명	
	주소	
	연락처	
	관계	(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참고자료	
------	--

신고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별지 제4호 서식]

이해관계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	-----	--

신청인	성명	
	주소	
	연락처	

업무 담당 공무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신청 취지	
-------	--

신청 원인	<p>직무 관련 업무(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체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p> <p>직무관련자(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p>
-------	---

참고 자료	
-------	--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고인

○○기관 귀중

[별지 제5호 서식]

의 견 서

성 명	
소 속	
직 위(직 급)	
담 당 업 무	
의 견	

본인은 직무 관련 업무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인)

[별지 제6호 서식]

업무 담당 공무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	-----	--

신청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신청 취지	
-------	--

신청 원인	<p>직무 관련 업무(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p> <p>직무관련자(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p>
-------	--

참고 자료	
-------	--

○○기관 귀중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별지 제7호 서식]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확인·조치 내역서

접수번호	접수일	
------	-----	--

업무 담당 공무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관련 사항	직무 관련 업무 (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직무관련자 (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확인 사항	
조치 내역	
기타 참고사항	

, 확인점검일

, 확인점검자 (인)

[별지 제8호 서식]

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서

재직하였던 기관·단체 등

기간	근무처(부서)	소재지	대표자	직위(급)	주요업무내용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

기간	업체명	사업의 목적	소재지	직위(급)	주요업무내용

기 타

기타

--	--	--	--	--	--

작성일자 : 20

신고자 : (인)

[별지 제9호 서식]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	-----	--

신고인	성명			
	소 속		직위(직급)	
	직무 관련 업무	(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직무관련자인 퇴직공무원	성명		연락처	
	현 소속			
	퇴직 전 소속		퇴직일	

접촉 일시		장소	
-------	--	----	--

접촉 유형	1. 골프, 2. 여행, 3. 사행성 오락, 4. 식사, 음주 등의 향연, 5. 기타
-------	---

접촉 사유	
-------	--

비용 부담자	
--------	--

참고서류	
------	--

신고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0호 서식]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

보고자 (상담요청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직 급)	

정치인 등 인적사항	성 명		직 책	
	소 속		전화번호	

요구사항	
------	--

부당한 근거	
--------	--

년 월 일

보고자(상담요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2호 서식]

외부강의 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연락처

활동 유형	[] 강의, 강연	[] 기고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기타()

요청인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외부강의등 주제			
-------------	--	--	--

장 소			
-----	--	--	--

일 시	20 ~ 20 시 분 ~ 시 분	일괄신고	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	--------------------------------------	------	--------------------------------

사례금	총액 _____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_____천원 별도]		
-----	---	--	--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요청기관에서 교통비·숙박비·식비 등 여비를 사례금과 구분하여 별도 지급한 경우 [] 속에 기재함. ※ 혼동
초래 문의 있었음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남 해 군 공 보

(18) 제 607 호

2018년 5월 17일

[별지 제13호 서식]

초과사례금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연락처

외부강의등 유형	<input type="checkbox"/>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input type="checkbox"/> 회의
-------------	---

활동 유형	<input type="checkbox"/> 강의, 강연 <input type="checkbox"/> 기고 <input type="checkbox"/>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input type="checkbox"/> 기타()
-------	--

요청인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요청 사유	
-------	--

외부강의등 주제	
----------	--

장 소	
-----	--

일 시	20 ~ 20 시 분 ~ 시 분
-----	--------------------------------------

사례금	총액 _____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설비) _____천원 별도)
-----	---

초과사례금	초과사례금 액수 : _____천원
-------	--------------------

초과사례금 반환	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15호 서식]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직급)

청구금액	
------	--

반환계좌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	-------------------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	금품 (물품)	
	수량 (금액)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빙서류 목록	※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람	성명	주소
	연락처	청구인과의 관계
	직무관련 내용	

기타 사항	
-------	--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4호 서식]

수수 금지 금품 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소속	연락처
	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신고취지 및 이유	
--------------	--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금품등 반환여부 및 방법	반환여부
	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

증거자료	
------	--

비고	
----	--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16호 서식]

금품등 인도확인서

인도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인도를 확인합니다.

인도일 : 20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인수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17호 서식]

금품 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

인도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18호 서식]

금품등 관리대장

일련 번호	신고 접수번호	신고 일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신고자			제공자			인도 일	관리 부서 (관리자)	보관장 소	처리결 과	처리 일	비고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9호 서식]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	----	----	--------

신 고 사 항

금전 차용

금전 대부

거 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상환기일		
거래금액 (이율)		거래원인		

물품 계약

용역 계약

공사 계약

거 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거래금액		거래원인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거 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대상		거래 금액		
거래원인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참고자료

※소명자료 첨부

[별지 제20호 서식]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60일
------	------	------	------	-----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명	
	소속 및 직위(직급)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동의
- 부동의

신 고 취 지 및 이유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용	일시
	장소
	내용
증거자료 목록	* 증거자료 첨부
비고	

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고자

OOO장

귀하

[별지 제21호 서식]

상담기록관리부

상담일시	상담유형	[] 방문 [] 전화 [] 기타()
------	------	-------------------------

상 담 요청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직위(직급)	연락처

상담 내용

상담 결과

년 월 일

행동강령책임관

(서명 또는 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p> <p>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u>단체</u></p> <p>1) ~ 3) (생략)</p> <p>나. 인가·허가 등의 변경 또는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u>단체</u></p> <p>다. 수사·감사·감독·검사·단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u>단체</u></p> <p>라. 재결·결정·검정·감정·시험·사정·조정·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u>단체</u></p> <p>마. 소집·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u>단체</u></p> <p>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u>단체</u></p> <p>사.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p>	<p>제2조(정의) ----- -----.</p> <p>1. ----- ----- ----- ----- <u>법인·</u> <u>단체</u>-----.</p> <p>가. ----- ----- ----- <u>법인·단체</u></p> <p>1) ~ 3) (현행과 같음)</p> <p>나. ----- ----- ----- <u>법인·단체</u></p> <p>다. ----- ----- <u>법인·단체</u></p> <p>라. ----- ----- ----- <u>법인·단체</u></p> <p>마. ----- ----- <u>법인·단체</u></p> <p>바. ----- ----- ----- <u>법인·단체</u></p> <p>사. -----</p>

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아. 그 밖에 군수가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2. ~ 3. (생략)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을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2.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4.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사람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공무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 법인·단체

아. -----

----- 법인·단체

2. ~ 3. (현행과 같음)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해당 사실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군수가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무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공무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공무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급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공무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가.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나.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다.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그 밖에 군수가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 직무관련자 또는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군수에게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 직무 재배정

4. 전보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⑥ 군수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제4항에 따른 조치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한 현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의2(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군수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하였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

<신 설>

<신 설>

용

2.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3.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의3(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소속된 기관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소속 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군수가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군수가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군수가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신 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공무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공무원에게 명하여야 한다.

제5조의4(가족 채용 제한) ① 군수는 군과, 군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군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산하기관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의 가족이 군의 산하기관에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5조의5(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군수는 군과, 군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

자가 고위공직자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이 군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군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산하기관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군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5조의6(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인 군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다음 각 호의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골프를 함께 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여행을 함께 하는 행위
3.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행성 오락을 함께 하는 행위
4. 직무관련자인 퇴직자가 비용을 부담하는(퇴직자가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후원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① ~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보고나 상담요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
 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
 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
 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
 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도 포함한다.) 식사·음주 등의 향응을
 함께 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사적 접촉을 할 때에는
미리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접촉을 마친 날부터 5
 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
 리)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별지 제10호 서식-----.

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
 -----.

② -----

 -----공직자-----

 -----.

③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
 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

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군수가 공직자가 아닌 자의

<신 설>

제14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 ③ (생 략)

1. (생 략)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1에 따른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④ 공무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13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
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 ③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

제15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및 신고)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군수가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군수가 정하는 금액이란 별표 2와 같다.

② 공무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군수에게 미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무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생략)

라 그 수수 사실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및 신고) ①-----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별표 2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②-----

-----,

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⑤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으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은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은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

----.

제16조(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①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군수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

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②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이거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제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공무원은 직 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 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

2. ~ 4. (생 략)

제21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군수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 ⑤ (생 략)

⑥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은 제공 자·제공받은 자·제공받은 금품·제공일시· 처리경위 등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

-----.

-----.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 4. (현행과 같음)

제21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 리) ①-----

--별지제14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공무원은 제15조제5항에 따라 초과 사례금을 반환하였거나,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증 명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그 반환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④ ~ ⑤ (현행과 같음)

⑥ -----

-----별지 제18호 서식에-----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23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 ④ (생략)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별지 제21호 서식에-----
-----.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18 - 61호

감암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고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 지구를 지정하였음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4일

남 해 군 수

지구명	위치	지정내용			지정사유	비고
		유형	등급	면적 (㎡)		
감암지구	남해군 설천면 노량리 558번지일원	해일 침수 위험	가	48,000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관리 및 정비를 통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신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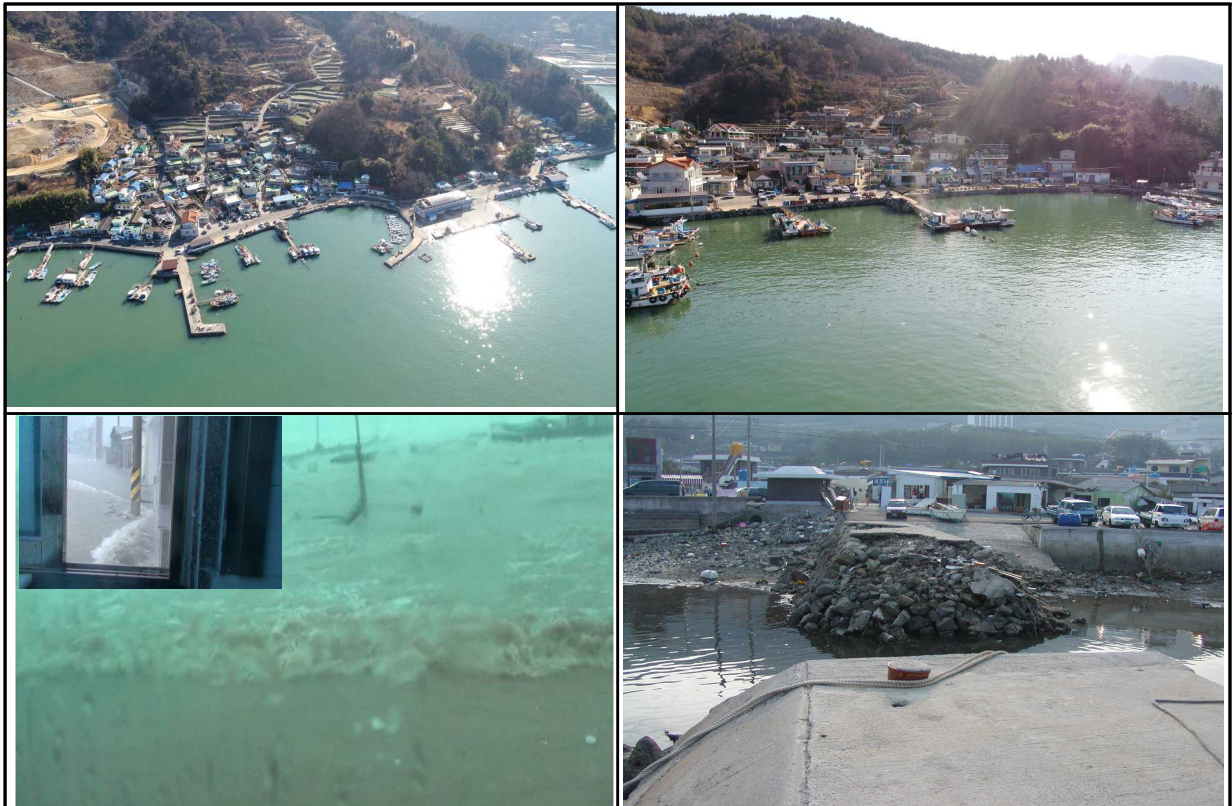
붙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도면 1부.

□ 감암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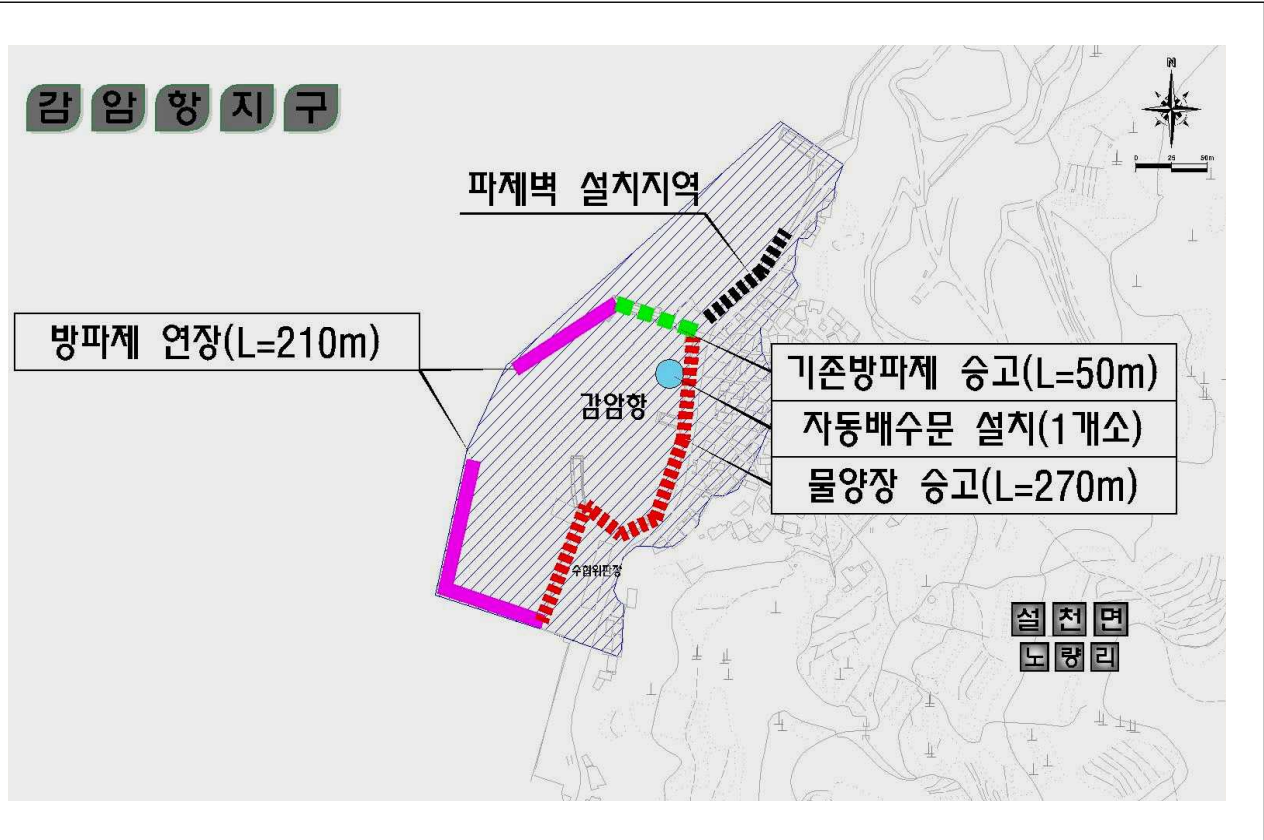
□ 지형도면



□ 현황사진



□ 감암지구 고시도면



남해군 고시 제2018 - 64호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남해군 「서대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의 마을정비구역 지정의 해제가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9일

남 해 군 수

1.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 : 붙임참조
2. 관계도면 : 붙임참조(세부 관계도서는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3. 관계도서는 남해군청 미래전략사업단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

-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 가.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 취락지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제한내용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층수	건폐율 (%)	용적률 (%)			
폐지	234	서대지구	자연취락 지구	창선면 서대리 산112번지 일원	2층 이하	60 이하	80 이하	29,459	-	

- 취락지구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34	서대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지구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취락지구 - 면적 : 29,459㎡ 	신규마을조성 사업취소로 마을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됨에 따라 「농어촌정비법」 제117조제2항 규정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을 지정 전의 상태로 폐지토록 함

남해군 고시 제2018 - 67호

남해군계획시설(교통시설: 도로, 도시계획도로 소로2-27호 향교~신우보람) 실시계획인가 고시

도시계획도로(소로 2-27호 향교~신우보람) 개설공사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와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인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8년 5월 15일

남 해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군계획시설사업(교통시설 : 도로)
- 명 칭 : 도시계획도로(소로 2-27호, 향교~신우보람) 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공사명	노선번호	위치	연장	폭	비고
도시계획도로 (소로2-27호,향교~신우보람) 개설공사	소로 2-27호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일원	154m	8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남해군수
- 주 소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로부터 6개월 이내
- 준공예정일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 붙임참조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및 그 소유자의 성명·주소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비 고
	읍·리	지번				주 소	성 명		
1	남해읍 북변리	572-2	대	91	91		남해군	-	
2	남해읍 북변리	572-4	대	20	20		남해군	-	
3	남해읍 북변리	573-16	중	46	46		남해군	-	
4	남해읍 북변리	569-4	대	40	40	남해읍 북변리	김0언	-	
5	남해읍 북변리	573-18	대	152	152		남해군	-	
6	남해읍 북변리	573-7	대	152	152		남해군	-	
7	남해읍 북변리	573-17	대	93	93		남해군	-	
8	남해읍 북변리	573-6	대	63	63		남해군	-	
9	남해읍 북변리	622-12	도	118	3		국(기획재정부)	-	
10	남해읍 북변리	622-13	대	18	18		국(기획재정부)	-	
11	남해읍 북변리	587-1	대	66	66		남해군	-	
12	남해읍 북변리	585-34	대	41	41		남해군	-	
13	남해읍 북변리	585-33	대	58	58		남해군	-	
14	남해읍 북변리	573-13	대	6	6		남해군	-	
15	남해읍 북변리	573-5	대	7	7	남해읍 북변리	정0주	-	
16	남해읍 북변리	574-2	대	23	23		남해군	-	
17	남해읍 북변리	574	대	70	70		남해군	-	
18	남해읍 북변리	622-38	대	10	10		국(기획재정부)	-	
19	남해읍 북변리	622-14	대	13	13		국(기획재정부)	-	
20	남해읍 북변리	585-21	대	42	42		남해군	-	
21	남해읍 북변리	585-19	대	208	208		남해군	-	
22	남해읍 북변리	584-2	대	91	91		남해군	-	
23	남해읍 북변리	584-5	대	36	36		남해군	-	
24	남해읍 북변리	584-8	대	18	18		남해군	-	

남 해 군 공 보

(50) 제 607 호

2018년 5월 17일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비 고
	읍·리	지번				주 소	성 명		
25	남해읍 북변리	585-18	전	95	95		남해군	-	
26	남해읍 북변리	585-32	전	143	143		남해군	-	
27	남해읍 북변리	585-31	대	140	140		남해군	-	
28	남해읍 북변리	585-30	대	80	80		남해군	-	
29	남해읍 북변리	585-15	대	60	60		남해군	-	
30	남해읍 북변리	585-29	대	8	8		남해군	-	
31	남해읍 북변리	585-14	대	116	116		남해군	-	
32	남해읍 북변리	622	도	400	115		국(기획재정부)	-	
33	남해읍 북변리	585-24	도	126	16		남해군	-	
34	남해읍 아산리	1418	도	681	98		국(국토교통부)	-	
35	남해읍 아산리	189-2	도	647	259		남해군	-	
36	남해읍 아산리	189-12	대	7	7	서울 성동구 행당동	박0철	-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조서

일련 번호	위 치	대 상 지 장 물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물건의 종류	구조, 연생	단 위	수 량	주 소	성 명	
1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573-7	주택1	블록슬라브	㎡	24		남해군	
		주택2	블록기와	㎡	38		남해군	
		주택3	블록스레트	㎡	94		남해군	
		창고	블록슬라브, 스레트	㎡	38		남해군	
		물탱크		EA	5		남해군	
		수 목		주	5		남해군	
2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573-6	주택1	블록슬라브	㎡	14		남해군	
		주택2	블록스레트	㎡	92		남해군	
3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587-1	주택1	블록스레트	㎡	58		남해군	
		창고	블록슬라브, 스레트	㎡	35		남해군	
		물탱크		EA	2		남해군	

일련 번호	위치	대 상 지 장 물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물건의 종류	구조, 년생	단 위	수 량	주 소	성 명	
4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585-21	주택1	블록슬라브	m ²	99		남해군	
		창고	블록스레트	m ²	11		남해군	
		물탱크		EA	2		남해군	
		수 목		주	1		남해군	
5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585-33	주택1	블록스레트	m ²	33		남해군	
6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585-19	주택1	블록합석 스레트	m ²	155		남해군	
		창고	블록슬라브, 스레트	m ²	80		남해군	
		물탱크		EA	2		남해군	
7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584-8	주택1	블록합석 스레트	m ²	66		남해군	
		창고	블록슬라브	m ²	15		남해군	
		물탱크		EA	1		남해군	
8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585-31	주택1	블록합석 스레트, 싱글	m ²	101		남해군	
		수 목		주	4		남해군	
9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585-30	창고	블록스레트	m ²	5		남해군	
		수목		주	93		남해군	
10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585-29	창고	블록스레트	m ²	3		남해군	
11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189-12	수목		주	36	서울 성동구 행당동	박0철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18 - 542호

마을어업 면허 처분사항 공고

수산업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어업면허 처분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일

남 해 군 수

○ 어업면허 처분사항

면허번호	어업의종류 (어업방법)	포획물	어장 위치	면허 면적 (㎡)	면허기간	어업권자		처분 년월일	비고
						주소	성명		
마을어업 제286호	마을어업	정착성 수산동식물	창선면 당항지선	62,800	2018.05.01 ~ 2028.04.30	남해군 창선면	당항어촌계	2018.05.01	신규 개발
마을어업 제287호	마을어업	정착성 수산동식물	창선면 냉천지선	105,400	2018.05.01 ~ 2028.04.30	남해군 창선면	냉천어촌계	2018.05.01	신규 개발

남해군 공고 제2018 - 543호

공시송달 공고

「북남치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따라 보상계획을 통지하고자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협의가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보상계획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5월 3일

남 해 군 수

1. 사업개요

- 1) 사업 명칭 : 북남치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 2) 사업 목적 : 붕괴위험지역 지정 관리 및 정비를 통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 3)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경상남도 남해군수
 - 나. 주 소 : 경상남도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서변리 24-1)
- 4) 사업 시행 면적 및 규모
 - 가. 위 치 :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남치리 158번지 일원
 - 나. 사업면적 : 2,575㎡

2. 의견 제출 기간 및 장소

- 1) 의견 제출기간 : 2018. 5. 3. ~ 5. 17. (14일간)
- 2) 의견 제출 장소 : 남해군청 안전총괄과 복구지원팀 ☎ 055-860-3295

3. 공시송달 대상자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 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 고
	소재지	지번				주 소	성 명	주 소	성명	권리 관계	
1	고현면 남치리	산122	임	1,091	211	고현면 대사리	박지0				
2	"	166	전	504	3	고현면 남치리	박한0				

의 건 서

1. 제 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건		
4. 기 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8. . . .

의견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남해군수 귀하

비 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

남해군 공고 제2018 - 545호

남해군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4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 조례」

2. 개정이유

상위 법령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심의회 기구를 남해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와 남해군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로 수정하고 법령 제명과 상이한 부문을 보완 정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명칭 등 수정(안 제2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조제1호로 수정

나. 심의회 명칭 수정(안 제7조)

- 「남해군 농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설치·운영조례」 제2조에 따른 남해군 농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남해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와 남해군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로 수정

다. 지원센터 명칭 수정(안 제8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에 따라 남해군 귀농·귀촌지원센터와 남해군 귀어·귀촌지원센터를 각각 설치 운영한다. 로 수정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18년 5월 28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처

- 1) 주 소 : ☎ 52430,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 2449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 2) 연락처 : 전화 055-860-3906, 팩스 055-860-3981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환경정책팀 (☎ 055-860-39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 견 제 출 서

자 치 법 규 명				
의 견 제 출 자	성 명 (명 칭)			전 화 번 호
	주 소			
자 치 법 규 안 내 용		찬 성 여 부		의 견
		찬 성	반 대	

「행정절차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호제1호”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7조 중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설치·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남해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와 남해군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로 한다.

제8조 중 “남해군 귀농어업·귀촌 지원센터”를 “남해군 귀농·귀촌지원센터와 남해군 귀어·귀촌지원센터”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본문 생략> 1. ---- 「<u>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u>」 제3조제1호----- ----. 2.~3.<생 략></p>	<p>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u>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u>」 제3조제1호 및 <u>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u>」 제2조제1호-----. 2.~3.<현행과 같음></p>
<p>제7조(심의회 심의)----- ----- 「<u>남해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설치·운영 조례</u>」 제2조에 따른 남해군 <u>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u> -----.</p>	<p>제7조(심의회 심의)----- ----- <u>남해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와 남해군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u> -----.</p>
<p>제8조(귀농어업인·귀촌지원센터 설치·운영)----- -----남해군 <u>귀농어업·귀촌 지원센터</u>-----.</p>	<p>제8조(귀농어업인·귀촌 지원센터 설치·운영)----- -----<u>남해군 귀농·귀촌지원센터와 남해군 귀어·귀촌지원센터</u>-----.</p>

남해군 공고 제2018 - 547호

남해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남해군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2. 제정이유

국민의식 개혁을 선도하는 국민정신운동단체인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활성화 및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업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남해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1조 ~ 제2조)
- 나.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책무 (안 제3조)
- 다.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범위 (안 제4조)
- 라. 바르게살기운동회원 사기진작 내용 (안 제5조)

4. 의견제출

가. 의견 제출기간 : 2018년 5월 24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행정과
- 2) 연락처 : 전화 055-860-3142, 팩스 055-860-3737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행정과 교류협력팀(860-314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남해군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들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과 그 구성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 남해군협의회와 그 하부조직인 읍면 위원회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책무)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진실·질서·화합을 이념으로 하여 정직한 개인, 더불어 사는 사회, 건강한 국가를 만들기 위한 국민정신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①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바르게살기운동 사업비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비 및 활동경비
3.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교육 및 훈련경비
4. 그 밖에 군수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교부와 그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및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사기진작)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기를 진작할 수 있다.

1. 유공자 표창
2. 불우한 바르게살기운동회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격려
3.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공고 제2018 - 566호

남해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8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2. 개정이유

이장 연령 노령화 추세 및 이장 임무 수요증가에 따라 이장 사기진작 대책의 일환으로 이장자녀 장학금 지원대상을 고등학생에서 대학생까지 확대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장학생의 자격을 대학생으로 확대하여 개정 (안 제4조)
- 나.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액 범위 규정하여 개정 (안 제6조)
- 다. 장학금 지급시기 개정(안 제7조)
- 라.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 개정(안 제8조)

4. 의견제출

가. 의견 제출기간 : 2018년 5월 30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행정과
- 2) 연락처 : 전화 055-860-3142, 팩스 055-860-3737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행정과 교류협력팀(860-314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 견 제 출 서

자 치 법 규 명

「남해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의 견
제 출 자

성 명 (명 칭)

전 화 번 호

주 소

자 치 법 규 안 내 용

찬 성 여 부

의 견

찬 성

반 대

「행정절차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장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재능이 뛰어난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를 “남해군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한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이장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모범적인 학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입생은 입학 전 최종 학교 학년의 성적이 해당 학년 학생의 100분의 50 이내여야 한다.

- 1. 고등학생 : 신청 직전 학기의 학업성적이 해당 학년 학생의 100분의 50 이내인 학생
- 2. 대학생 : 신청 직전 학기의 평균학점이 3.0 이상인 학생
- 3. 기능, 체육, 예능분야의 시·군 단위 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학생

② 제1항 각 호의 자격 요건을 갖춘 때에도 이장 1명에 대하여 1자녀로 한다.

제3조 중 “제2조 규정에”를 “제2조에”로 하며, “학년마다”를 “학년 초에”로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 중 “읍면장”을 “읍·면장”으로 하고, “경우에는”을 “때에는”으로 하며,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를 “장학생 선발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장학생 선발기준은 군수가 정하되, 필요하면 해당 분야 전문가 및 읍·면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장학금액)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수업료와 학교운영 지원비로 하

며,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매년 고등학생 장학금 중 최고금액의 120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수업료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분기별로 공납금 납입기한 경과” 를 “학기별로 매 학기 개시”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없으면” 을 “없는 한” 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장학생이 자퇴 또는 휴학하거나 퇴학 또는 정학처분을 받았을 경우
2. 장학생이 연간 수업료에 상응하는 다른 지원금을 해당 연도에 이미 받았거나 받기로 예정되어 있을 경우
3. 보호자인 이장이 그 직을 상실한 경우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이장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재능이 뛰어난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u></p>	<p>제1조(목적) -----<u>남해군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한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장학생의 자격) <u>장학생은 이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u></p> <p>1. <u>품행이 단정하고 재학 중 직전 학기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단, 신입생은 입학성적이 100분의 50 이내인 사람)</u></p> <p>2. <u>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u></p>	<p>제4조(장학생의 자격) ① <u>장학생은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이장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모범적인 학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입생은 입학 전 최종학교 학년의 성적이 해당학년 학생의 100분의 50 이내여야 한다.</u></p> <p>1. <u>고등학생 : 신청 직전 학기의 학업성적이 해당학년 학생의 100분의 50 이내인 학생</u></p> <p>2. <u>대학생: 신청 직전 학기의 평균학점이 3.0 이상인 학생</u></p> <p>3. <u>기능, 체육, 예능분야의 시·군 단위 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학생</u></p> <p>② <u>제1항 각 호의 자격 요건을 갖춘 때에도 이장 1명에 대하여 1자녀로 한다.</u></p>
<p>제3조(추천) 읍·면장은 <u>제2조</u>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 <u>학년마다</u>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p>	<p>제3조(추천)----<u>제2조에</u>----- ----- ----- -----<u>학년초에</u>----- -----</p>

제4조(선발) 군수가 읍면장으로부터 추천
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 학년 개시 후 1개월 이내
에 확정하여야 한다.

제6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
학금은 공납금(수업료 및 학교운영 지원
비)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공납금의 일부만 지급할 수도 있다.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분기별
로 공납금 납입기한 경과 후 1개월 이
내에 군수가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
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한꺼번에 지
급할 수 있다.

②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제8조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없으면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제8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서 선발
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
할 수 있다.

1.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
을 받았을 경우
2. 해당 학생의 연간 수업료에 상응하는
공적 장학금을 해당 연도에 이미 받았
거나 받기로 예정되어 있을 경우
3. 이장에서 해임된 경우

제4조(선발)-----읍·면장-----
-----때에는
장학생 선발기준-----

제6조(장학금액)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로 하
며,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매년
고등학생 장학금 중 최고금액의 120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수업
료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학기별
로 매 학기 개시 -----

② -----
-----없는한 -----

제8조(지급의 정지)-----

1. 장학생이 자퇴 또는 휴학하거나 퇴학
또는 정학처분을 받았을 경우
2. 장학생이 -----
다른 지원금-----

3. 보호자인 이장이 그 직을 상실한 경
우

남해군 공고 제2018 - 569호

남해군관리계획(공원,수도공급설비)결정(변경) 공람·공고

남해군관리계획(공원,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남해군 계획 조례」 제7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분께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도서는 우리군 도시건축과에 비치하오니 보시기 바랍니다.

2018년 5월 10일

남 해 군 수

- 1. 건 명 : 남해군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
- 2. 주요 결정(변경) 입안 내용
 - 가. 군관리계획결정(변경)
 - 1) 공원
 - 위 치 : 남해군 창선면 대벽리 산9번지 일원
 - 면 적 : 19,950㎡
 - 2) 수도공급설비
 - 위 치 : 남해군 설천면 금음리 770-1번지
 - 면 적 : 96㎡
 - 나. 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 <붙임1>
 - 다. 관련도서 : 실음생략
- 3. 공람기간 : 신문 게재 다음날부터 14일간

4. 관련도면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남해군 도시건축과(☎055-860-3415)

5. 의견제출방법

가.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 연락처(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붙임1>

□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공간시설

1)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A	(가칭) 단항 공원	근린 공원	남해군 창선면 대벽리 산9번지 일원	-	증)19,950	19,950		

■ 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A	(가칭) 단항 공원	○ 신설 A = 19,950㎡	○ 남해군 진입관문인 창선면 대벽리에 위치한 나강산에 공원을 조성하여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조망권을 확보하고 주민 휴식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금회 군관리계획(공원)으로 결정하고자 함

2)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조성계획 총괄표

구	분	면 적 (㎡)	비 고
공	원	19,950.0	
시	설	5,052.8	시설율 : 25.33%
건축면적	바	120	
	연	120	

남 해 군 공 보

(76) 제 607 호

2018년 5월 17일

나) 토지이용계획표

구	분	면 적 (㎡)	건축면적 (㎡)	비 고
총	계	19,950.0	120	
공	원	5,052.8	-	
도	로	2,475.8	-	
조	경	1,607.0	-	
휴	양	273.0	-	
유	회	-	-	
운	동	-	-	
교	양	-	-	
편	익	697.0	120	
녹	지	14,897.2	-	

다) 세부시설조서

구	분	위	치	부지면적 (㎡)	규	건축면적(㎡)		비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19,950.0		120	240	
도 로 및 광 장	1	소		2,475.8	-	-	-	
	1-1	진입로/산책로		1,691.8	-	-	-	
	1-2	진입마당		188.0	-	-	-	
	1-3	달빛마당		163.0	-	-	-	
	1-4	별맞이마당		621.0	-	-	-	
조경시설	2	소		1,607.0	-	-	-	
	2-1	음악이흐르는계단		1,607.0	-	-	-	
휴양시설	3	소		273.0	-	-	-	
	3-1	별자리데크		125.0	-	-	-	
	3-2	반지데크		103.0	-	-	-	
	3-3	휴게쉼터		45.0	-	-	-	
편익시설	6	소		697.0	-	120	240	
	6-1	바다전망대		125.0	-	-	-	
	6-2	주차장		572.0	-	120	240	
녹	지	7	소	14,897.2	-	-	-	

라) 도로조서

등급	류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총	계			617.2	1,691.8			
산책 로		1	4.0	120	480	진입로	진입마당	별맞이마당
		2	2.5	372	930	산책로	진입마당	산책로1
		3	2.5	94	235	산책로	산책로1	별맞이마당
		4	1.5	24	36	연결로	산책로2	달빛마당
		5	1.5	7.2	10.8	연결로	남측구역계	산책로2

나. 유통 및 공급시설

1)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7	금음가압장	설천면 금음리 770-1번지	96	감)96	-	남해고 제2012-43호 (2012.05.17.)	

■ 결정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7	금음가압장	○ 폐지 A=96㎡	○ 당초 군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로 결정된 금음가압장은 미집행된 군계획시설로서 변경된 수도공급계획상 불필요함에 따라 금회 군관리계획을 변경(폐지)하고자 함

남해군 공고 제2018 - 570호

남해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남해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9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이장 연령 노령화 추세 및 이장 임무 수요증가에 따라 이장 사기진작 대책의 일환으로 이장자녀 장학금 지원대상을 고등학생에서 대학생까지 확대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규칙에 규정한별지 장학생 추천서식 내용을 변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별지 제2호서식] ‘장학생 추천서’ 개정

4. 의견제출

가. 의견 제출기간 : 2018년 5월 30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행정과
- 2) 연락처 : 전화 055-860-3142, 팩스 055-860-3737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행정과 교류협력팀(860-314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 견 제 출 서

자 치 법 규 명		「남해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의 견 제 출 자	성 명 (명 칭)			전 화 번 호
	주 소			
자 치 법 규 안 내 용		찬 성 여 부		의 견
		찬 성	반 대	

「행정절차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해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해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을 “남해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으로 한다.

제1조 중 “「남해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를 “「남해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남해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u> <u>시행규칙</u></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u>남해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u>」(이하 “<u>조례</u>” 라 한다)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남해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u> <u>시행규칙</u></p> <p>제1조(목적) ---- 「<u>남해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u>」----- -----.</p>

[별지 제2호서식]

장 학 생 추 천 서

(제2조 관련)

1. 주 소 :
2. 학교명 : 학년 학과
3. 성 명 : (한글) (남 · 여)
(한자)
4. 생년월일 : 년 월 일

위 사람은 본 학교의 학생으로서 다음에 의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으므로 이에 추천합니다.

성 적	품 행
1. 학업성적 <input type="checkbox"/> 직전학기 재적학년석차 : <input type="checkbox"/> 직전학기 평균학점 : 2. 기능, 체육, 예능분야 입상성적 : 3. 타 장학금 수혜(예정) 여부 : <input type="checkbox"/> 장학금명 : <input type="checkbox"/> 장학금액(원) :	1. 예의범절 2. 학습태도

※ 대학생인 경우, 평균환산점수(4.5만점 기준)가 기재된 성적증명서 원본 첨부

년 월 일

학교장 · 총장 · 학장 (직인)

남해군수 귀하

남해군 공고 제2018 - 575호

남해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남해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1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 제정이유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건립된 남해생활문화센터의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지역주민의 자발적·일상적 문화예술 활동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명칭 및 위치(안 제1조 ~ 제2조)
- 나. 시설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4조)
- 다. 운영시간 및 휴관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라. 시설의 사용 신청, 취소, 사용료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8조)
- 마. 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4. 의견제출

가.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 남해군수(참조 문화관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주소 : ☎668-801,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문화관광과
- 연락처 : 전화055-860-8625, 팩스055-860-3748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5. 기 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055-860-86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 견 제 출 서

자 치 법 규 명					
의 견 제 출 자	성 명 (명 칭)			전 화 번 호	
	주 소				
자 치 법 규 안 내 용		찬 성 여 부		의 견	
		찬 성	반 대		

「행정절차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남해군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명칭은 남해생활문화센터(이하 “생활문화센터”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1-22에 둔다.

제3조(시설) 생활문화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다목적실(공연, 전시, 행사 등 용도)
2. 전시실
3. 동호회실
4. 휴게공간
5. 악기연습실(밴드, 사물놀이 등)
6.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기능) 생활문화센터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2. 각종 문화예술 체험·창작활동의 지원 및 정보자료의 제공
3. 문화예술 관련 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지원
4. 영화·음악·무용·미술 등의 공연 및 전시 행사
5.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5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①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운영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평 일 09:00 ~ 21:00
 2. 토·일요일 09:00 ~ 18:00
- ② 생활문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휴관일 :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2. 1월 1일
 3. 설, 추석 연휴기간
 4. 국경일 또는 정부에서 지정한 공휴일
 5. 그 밖에 자료의 정리 등 특수한 사정으로 휴관이 불가피할 때

제6조(시설의 사용 신청 등) ① 생활문화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은 사용개시 7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접수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허가를 아니 할 수 있다.

- 1. 공공질서 유지와 미풍양속 등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 3. 물품판매 등 순수 영리목적의 행사

③ 제1항의 사용신청이 중복될 때에는 사용신청서 접수순에 따라 허가 하며, 시설의 사용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7일 이내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군수의 승낙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제7조(사용허가 취소 등)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설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 1.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사용허가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 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5.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6. 그 밖에 사용자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사용료) 사용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납부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 할 수 있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 2.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발전 및 공익상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 등을 반환할 때는 별표 1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

신 청 인	단 체 명		전화번호	집	
				휴대폰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주 소				
신청사항	시 설 명				
	사용목적 (용 도)				
	사용기간	년	월	일	시 분부터 시 분까지(일간)
	변경신청	신청사유 :			
변경사항 :					
사 용 료					
기 타 서 류					

「남해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서명, 날인)

남 해 군 수 귀하

[별표 1]

생활문화센터 사용료(제8조 관련)

1. 사용료(다목적실, 동호회실, 전시실, 악기연습실)

(단위 : 원)

구분 시설명	사용기준	사용료	비 고
다목적실	오전	20,000	1. 사용기준시간 ○ 오전 : 10:00 ~ 13:00(3시간) ○ 오후 : 14:00 ~ 17:00(3시간) ○ 야간 : 18:00 ~ 21:00(3시간)
	오후	20,000	
	야간	30,000	
동호회실, 전시실, 악기연습실	오전	3,000	2. 가산요율 ○ 기준시간 초과시 매시간 50% 가산 ○ 냉·난방사용시 50% 가산
	오후	3,000	
	야간	5,000	3. 사용료는 부가가치세(10%) 미포함 금액임

2. 사용료 반환(다목적실, 동호회실, 전시실, 악기연습실)

반 환 기 준		
운영자의 책임있는 귀책사유	1. 생활문화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 되었을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되지 못하였을 경우	전액 반환
사용자의 책임있는 귀책사유	1. 사용일 1일전 취소신청을 한 경우	전액 반환
	2. 사용일 당일 취소신청을 한 경우	반환하지 아니함

남해군 공고 제2018 - 578호

남해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1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계획 조례」

2.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우리 군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용도지구 통·폐합으로 인한 행위제한 등 정비

-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정비 및 법령 개정에 따라 폐지된 지구의 행위제한 사항 삭제(안 제27조~제28조, 제30조~제37조, 제39조)

나. 군계획조례 내용중 “장례식장” 을 “장례시설” 로 용어 수정

- 별표 7, 별표 12, 별표 14, 별표 15, 별표 17, 별표 18, 별표 20, 내용중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을 “장례시설” 로 수정

4. 의견제출

가.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도시건축과
- 연락처 : 전화 055-860-3413, 팩스 860-3739, e-mail : dongak@korea.kr

의견제출서

자 치 법 규 명				
의 견 제 출 자	성명(명칭)	전화번호		
	주 소			
자치법규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찬성	반대	

「행정절차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 제목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을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6호 중 “장례식장” 을 “장례시설” 로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층수는 3층 이하, 건축물의 높이는 12미터이하로 한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30조 본문 중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 를 “자연경관지구” 로 한다.

제31조를 삭제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제33조를 삭제한다.

제34조를 삭제한다.

제35조를 삭제한다.

제36조를 삭제한다.

제37조의 제목 “(공용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을 “(중요시설물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77조제1항” 을 “영 제76조제2호” 로, “공용시설보호지구” 를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용)안” 으로 한다. 같은 조 제16호 중 “장례식장” 을 “장례시설” 로 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세차장 및 주차장은 제외한다)
-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가.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를 말한다)
 - 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시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0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6조제7호 관련)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 (2)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별표 12】**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6조제12호 관련)**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지원시설에 한정한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 시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별표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6조제14호 관련)

※ 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 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 시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6조제15호 관련)

※ 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 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정한다)·직업훈련소 및 연구소(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연구소로 한정한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제1차 산업생산품 가공공장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 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별표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6조제17호 관련)

※ 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 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가목 및 마목에서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6조제18호 관련)

※ 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 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및 사목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정한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 한다.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 부터 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 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것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등이 건축하는 농촌융복합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에 한정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박물관,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별표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6조제20호 관련)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바목에 해당하는 것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에서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 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비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5항제3호에 따라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7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p> <p>① (생 략)</p> <p>1. ~ 15. (생 략)</p> <p>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p> <p>③ (생 략)</p>	<p>제27조(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p> <p>① (현행과 같음)</p> <p>1. ~ 15. (현행과 같음)</p> <p>16.----- 장례시설</p> <p>③ (현행과 같음)</p>
<p>제28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 · 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 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각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p> <p>1. 자연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p> <p>2. <삭 제></p> <p>3. 수변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p> <p>4. <삭 제></p> <p>5. 전통경관지구 및 조망권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p>	<p>제28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층수는 3층 이하, 건축물의 높이는 12미터이하로 한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 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p>
<p>제30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 수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p>	<p>제30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p>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3

<삭 제>

조제1항에 따라 미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건물 외부에 창살이나 담장 등이 있는 정신병원 및 격리 병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교도소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
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시설

② 영 제7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항에도 불
구하고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제5호·제6
호·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
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 선으로부
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
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
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③ 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장·창고시
설·자동차관련시설 등은 미관지구의 지정목
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군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32조(미관지구 안에서의 대지 안의 공지) <삭 제>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령」 제31조
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
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
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허가권자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하여 블라드, 돌의자 설치
- 2. 조경식수
- 3.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 용계획에 의한 경우

제33조(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중심미관지구 : 5층이상
- 2. 역사문화미관지구 : 3층이하(20미터이상 도로에 연접하는 경우는 5층 이하)

<삭 제>

제34조(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미관지구 안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규칙으로 따로 정하여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삭 제>

제35조(미관지구 안에서의 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는 세탁물 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삭 제>

② 미관지구 안에서는 골뚝·환기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제36조(학교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삭 제>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보호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세차장 및 주차장은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를 말한다)

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제37조(공용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공용시설보호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 15. (생략)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제39조(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숙박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2. 위락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제37조(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용)안에서는 -----

1. ~ 15. (현행과 같음)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시설

제39조(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
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
수시설
-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
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
병원
-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
외한다)
-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세차장 및 주차장은
제외한다)
-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
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
도소를 말한다)
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
에 쓰이는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
례시설